

영등포구의회  
제13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08. 9. 23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# 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9. 10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■ 개정(제안) 이유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·징수하게 되어 우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 ■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” 로 개정
- 목적의 “국민건강보험료” 를 “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” 로 개정(제1조)
- 정의에 “보험료라 함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.” 신설(제2조 제3호)

## ■ 관련법규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

## 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없음

##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·징수하게 되어 우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9. 23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[제정 2007.4.27 법률 제8403호]

**제8조 (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)**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료"라 한다)와 통합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[일부개정 2008.6.11 대통령령 제20814호]

**제4조 (장기요양보험료율)**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.